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2조의2(제재시효) ① 제42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제424조제3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효”라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② 조치 대상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, 검사·조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

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u><신 설></u> | <p>제422조의2(제재시효) ① 제42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제424조제3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효”라 한다)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조치 대상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, 검사·조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</p> |

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흔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조치를 할 수 있다.